

| 변경 전   | 변경 후  |
|--|---|
| <p><b>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b></p> <p>(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p> <p>(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p> <p>(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합니다.</p> | <p><b>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b></p> <p>(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고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li> <li>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li> </ol> <p>(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p> <p>(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합니다.</p> |

**제 5 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4 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17 조, 제 27 조, 제 32 조, 제 36 조, 제 38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페이코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 5 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4 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17 조, 제 27 조, 제 33 조, 제 37 조, 제 39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페이코 포인트 등을 의미합니다.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하며, "회원"이 타 "회원"으로부터 양도 받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합니다.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4)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2 조 (발행)**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 22 조 (충전)**

“회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출금,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구매  
2.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혹은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의 전환

**제 23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3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비용)**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불수단(휴대폰 결제, 편의점 결제 등)을 통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충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4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1) "회원"은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제 25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등)**

(1)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가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전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이유로 “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환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 항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5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등)**

(1) “회원”은 "회사"가 포인트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가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전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이유로 “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환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 항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26 조 (환급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경우 구매 금액 또는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차감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 의한 수수료가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청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 하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의 90%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제 26 조 (환급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된 잔액 전부를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는 환불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때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 의한 수수료가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청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회원"이 잔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 다만, "회사" 또는 제 3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구매하여 "충전"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을 사용한 경우

(5)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유효기간 경과 후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6)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회사”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의 90%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6)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회사”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7) 본조 제 1 항 내지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 29 조 (소멸시효 등)

-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를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완성 전 까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소멸시효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소멸시효를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합니다.
- (3) "회사"가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소멸시효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서 소멸시효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소멸시효 완성 도래, 소멸시효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소멸시효 완성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제 29 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등)

-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 (2)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만료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전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 (6)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일("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의 경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초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원"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
|---|---|
|   | <p>(7) 제 6 항의 기간 산정 시, 보유 중인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총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합니다.</p>  |
| <p><b>제 31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b></p> <p>(1)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 4 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십분의 일(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p> <p>(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 <p>(3)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p> <p>(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p> | <p><b>제 31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b></p> <p>(1)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 4 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십분의 일(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p> <p>(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 <p>(3)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p> <p>(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p> |
| <p>&lt;부칙&gt; 본 약관은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p>  | <p>&lt;부칙&gt; 본 약관은 2023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p>  |